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6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 22.)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1.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종헌 의원)

식품으로 인한 위해는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에 의한 부적합, 신규 위해요소의 출현 등 그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음. 식품의 안전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총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협하는 주요 위해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해서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이 위해요소와 관련된 환경,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예측되어야 하며, 이러한 예측의 결과는 식품의 안전한 생산, 유통 및 소비에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의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의 영위는 물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경제·사회적 비용 감소와 소비자 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위해예측 실시 및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 등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생산기술에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생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축·수산물 등 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에 위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¹⁾.

□ 농축수산물은 유통·소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후검사에서 부적합으로 소비가 금지되더라도 이미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B2C²⁾ 모델 등 경로 다양화로 안전 보장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관행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탈피하여 새롭게 대두되는 잠재적 위해요소에 대비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위해예측’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위해예측을 실시하여³⁾ 그 결과를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며,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등을 위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참고로,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⁴⁾의 제정을 통해 품목별 사후관리 시스템을 공정관리·예방관리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영국 국무조정실 산하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⁵⁾ 센터의 경우 사전예방정책 지원을 위해 데이터 활용 예측

1) 살충제 달걀 파동, 비브리오 패혈증 조기 발생 및 위험지역 확대, 식품 이물질 중 곰팡이 최다 등

2) business to consumer, B2C: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 등이 대표적인 예임.

3) [참고 1] 식품위해 안전예측 모형

4)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기반의 정책 개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⁶⁾.

- 개정안과 같이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①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③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④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⑤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

기후변화 및 예기치 못한 식품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위해요소 중심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증거기반의 데이터·정보 구축·활용을 통한 국민 안심 확보 및 산업발전,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환경부 소관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와 기상청 소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⁷⁾가 설립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⁸⁾가 설립될 예정임.⁹⁾

- 다만, 개정안 제23조의2에서는 위해예측 실시의 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상 개정안 제23조의3은 식약처장이 위해예측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설립하거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5)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위험, 이슈, 기회를 식별하여 더 나은 준비를 하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며, 기술 이용을 통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검토 과정을 말함.

6) 식품안전정보원, 「농축수산물 안전성 데이터 통합·분석·활용 방안 연구」 2022. 12.

7) 2024.10.25.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재단법인 에이팩 기후센터 승계

8) 2026년 설립 예정

9) [참고 2]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관 설립 현황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식약처 소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 수집·분석·정보제공 등의 업무¹⁰⁾를 수행 중이므로, 별도 예측센터의 설립·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과

위해예측 업무는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에 한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기능·업무와 차별화되므로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식약처의 의견 등을 고려하고,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식품위해예측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편성¹¹⁾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총 34명으로 가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7억 2,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10) 「식품위생법」 제68조(정보원의 사업) 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1의2.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접수·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11) 식약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사업의 연구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이 편성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의원)

「식품위생법」 제68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음.

- [붙임] 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68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설립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의3의 제목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를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 실시를 목적으로 제3항”을 “위해예측 실시를 목적으로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제2호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7항에”를 “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7항) 중 “설립, 지정”을 “지정”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안 제23조의4제2항 중 “지도·감독에 관하여”를 “지도·감독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2에 따른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측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예측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u><삭 제></u>

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한다.

③ 예측센터는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
석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

2. 기후·환경 요인
과 위해요소 간
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
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
측 관련 정보 수

② (개정안 제3항과
같음)

집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사업

④ 예측센터의 장
은 제23조의2제1
항에 따른 위해예
측 실시를 목적으
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
요한 정보를 보유
한 기관이나 단체
의 장에게 자료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기관이나 단체
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
청에 따라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예측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③ -----
 --위해예측 실시를
 목적으로 제2항---

④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제1항에 따
라 지정된 예측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

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

-----.

1. (개정안과 같음)

2. -----
-- 제2항 -----

	<u>니한 경우</u>	-----
	3. <u>예측센터의 사업</u>	3.·4. (개정안과 같음)
	<u>실적 등이 현저</u>	
	<u>히 부실하여 식</u>	
	<u>품의약품안전처</u>	
	<u>장이 예측센터로</u>	
	<u>서 부적합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u>	
	4. <u>중대한 공익상의</u>	
	<u>사유 등으로 예</u>	
	<u>측센터의 사업을</u>	
	<u>계속 수행하기</u>	
	<u>어렵게 된 경우</u>	
	5. <u>제7항에 따른 지</u>	5. <u>제6항</u> -----
	<u>정기준에 적합하</u>	-----
	<u>지 아니하게 된</u>	-----
	<u>경우</u>	-----
	6. <u>그 밖에 예측센</u>	6. (개정안과 같음)
	<u>터의 업무 수행</u>	
	<u>이 적절하지 아</u>	
	<u>니하다고 식품의</u>	
	<u>약품안전처장이</u>	
	<u>인정하는 경우</u>	
	⑦ <u>예측센터의 설</u>	⑥ -----지
	<u>립, 지정 및 지정</u>	정-----
	<u>취소의 기준·절차</u>	-----

<신 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지도·감독 등-- ----- -----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예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제23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및 식품안전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위해예측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예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신 설>

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예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식품위해예측센터(이하 “예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예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해요소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후·환경 요인과 위해요소 간의 상관관계 등 조사·연구
3. 위해요소 예측 모델 개발
4. 위해요소 대응 시나리오 개발 및 예보 지원
5. 위해예측에 기반한 식품안전 정책 수립 지원
6. 위해예측에 관한 국제협력
7. 그 밖에 위해예측 관련 정보 수집·활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③ 예측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위해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신 설>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예측센터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제23조의4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사업실적의 현저한 부실 등 예측센터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